



행정안전부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신기술 특허 포함공사의 사용료 지급관련 질의회신(대한건설협회)

1.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759(2010.12.20)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총액입찰로 발주하면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면서 경비항목에 기술료를 반영하지 않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항목이 누락된 경우 물량내역서상 기술사용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는 설계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신기술의 보유자가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신기술 사용부분에 대하여 신기술보유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신기술 보유자이거나 또는 해당 신기술사용 부분에 대하여 신기술 보유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당초 신기술사용료를 설계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신기술 사용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대결 03/27

주무관 **조대정** 서기관 **최두선**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과-554 (2011.03.28.)

접수 계약제도실-177 (2011.03.28.)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 2100-3909

전송 2100-3899

/ djey@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